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손정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2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손정자, 이경숙, 김현택,
한송연, 전해연, 김상수,
박은경, 이상기, 김영실

1. 제안 이유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등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 포상 (안 제6조~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 출장소
 - 나. 남양주시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행사·축제에 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추진주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남양주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2.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

3. 행사·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위한 전용 운영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5조(사업), 제6조(지원)에 따라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 사업 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하여 추가 재정수반 없음

[참고 : 예산 및 집행현황]

- 2026년 다회용기 지원사업 : 20,000천원 (시비 100%)
- 2025년 다회용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 예산액 : 20,000천원 (시비 100%)
 - 집행액 : 18,440천원
 - 지원내용

축제명	사용인원(명)	사용수량(개)	집행액(천원)
계	11,180	45,200	18,440
다산정약용문화제	6,000	11,700	5,197
금곡고고고축제	2,000	12,500	6,139
퇴계원 새뜰, 아주작은 골목 축제	200	200	896
남양酒 캠핑 페스티벌	1,500	19,200	4,731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1,000	600	689
주민자치성과공유회	480	1,000	788

※ 공종별 단가합 : 752,000원

※ 다회용기 관련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 행사·축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